

부 산 가 정 법 원

심 판

사 건 2014느단4094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 구 인 겸 강 A
사 건 본 인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서울

주 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성을 "한(韓)"으로, 본을 "청주(淸州)"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이 유

1.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

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다음으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자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2. 11.자 2009스23 결정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구인은 19**년생으로 이미 성인이고, 형 강B과 강C, 자녀 강DD까지 있어 성과 본의 변경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청구인 자신의 만족감보다는 그로 인하여 청구인을 둘러싼 사회적·법률적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혼란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청구인은 성과 본의 변경을 통해 가족들에 대한 부정적 기억 등을 극복하고자 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이유는 성·본변경의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자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2015. 6. 10.

판사 정 영 태